

■ 도로교통법 시행령 [별표 9] <개정 2023. 10. 17.>

범칙행위 및 범칙금액(보행자 등)(제93조제1항 관련)

범칙행위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범칙금액
1. 보행자가 돌·유리병·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	제68조제3항제4호	5만원
2.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(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. 이하 제3호, 제5호, 제6호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같다)	제5조	3만원
3.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의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	제8조제1항 본문	
4. 실외이동로봇의 운용자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,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	제8조의2제2항	
5. 보행자가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한 경우	제10조제2항 본문	
6. 보행자가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 그 도로를 횡단한 경우	제10조제5항	
7. 보행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	제68조제3항제1호	
8. 보행자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	제68조제3항제2호	
9. 보행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	제68조제3항제3호	

<p>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</p> <p>10.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</p>	제68조제3항제6호	
<p>11. 보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·도경찰청장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,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</p> <p>12. 보행자가 횡단보도, 지하도,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곳으로 횡단하지 않은 경우(제5호의 행위는 제외한다)</p> <p>13. 보행자가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한 경우</p>	제6조 제10조제2항 본문 제10조제4항 본문	2만원
<p>14. 보행자가 경찰공무원이 보행자,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</p> <p>15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가 차도의 우측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</p>	제7조 제9조제1항 후단	1만원